

의안번호	2202518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4. 9. 9.
추계번호	24B247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가구원수별 농식품이용권 단가에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는 경우, 5년간 총 6조 457억원(연평균 1조 2,091억원)
 - (국 비) 5년간 총 2조 8,302억원(연평균 5,660억원)
 - (지방비) 5년간 총 3조 2,155억원(연평균 6,431억원)
 - (시나리오 2) 가구원수별 농식품이용권 단가에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개편된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 5년간 총 6조 4,539억원(연평균 1조 2,908억원)
 - (국 비) 5년간 총 3조 204억원 (연평균 6,041억원)
 - (지방비) 5년간 총 3조 4,335억원 (연평균 6,867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식품이용 권의 지급 등(안 제23 조의3 신 설)	[시나리오 1] 농식품이용권 지원 (A1)		11,236	11,336	11,428	11,512	11,587	57,099	11,420
		국비	5,231	5,278	5,321	5,359	5,395	26,583	5,317
		지방비	6,005	6,058	6,108	6,152	6,193	30,516	6,103
	[시나리오 2] 농식품이용권 지원 (A2)		12,040	12,147	12,245	12,334	12,415	61,182	12,236
		국비	5,606	5,655	5,701	5,743	5,780	28,485	5,697
		지방비	6,434	6,492	6,544	6,592	6,635	32,696	6,539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23조의4 신설)	사업 운영·관리(B)		659	663	668	682	685	3,358	672
		국비	336	338	340	352	353	1,719	344
		지방비	323	326	328	330	332	1,639	328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 재정소요	[시나리오 1] (C1=A1+B)		11,895	11,999	12,097	12,194	12,273	60,457	12,091
		국비	5,567	5,615	5,661	5,711	5,748	28,302	5,660
		지방비	6,328	6,384	6,436	6,482	6,525	32,155	6,431
	[시나리오 2] (C2=A2+B)		12,699	12,810	12,914	13,016	13,100	64,539	12,908
		국비	5,941	5,993	6,042	6,094	6,133	30,204	6,041
		지방비	6,757	6,817	6,872	6,922	6,967	34,335	6,867

주: 1. 본 추계에서는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체 가구에 대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기간 동안 시나리오별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1: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시나리오 2: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3. 국비 지원율: 서울 30%, 서울 외 50%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3 신설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u>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23조의4 신설 (전담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u>(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u>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u>(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u>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u>(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고,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농식품이용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 다만 개정안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대상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추계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전체 차상위계층 가구’(이하 ‘취약계층’이라 함)에 대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3041-385)’는 시범사업 기간(’20~’24년)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대상을 취약계층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 본사업인 ‘농식품바우처(3041-385)’으로 확대 시행 예정
 - ※ 대상 지자체도 24개(’24년 기준)에서 2025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예정
- 추가재정소요는 총 사업비용에서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안(기준선)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농식품이용권 지급 예산’ 및 ‘사업운영·관리비’ 등 두 가지로 구분

추가재정소요 = 전체 사업비용 - 현행 사업예산(기준선*)

*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편성 예산안

□ 본 추계에서 사용한 주요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가구수) 추계기간 동안 전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가구는 우리나라 총가구 대비 9.52%인 것으로 가정
 - 2024년 기준 총 가구수는 22,080,462가구, 취약계층 가구수는 2,102,074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1,851,920가구, 차상위계층 250,154가구
 -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은 2024년 7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 적용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의 총가구수에 취약계층 가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을 차례대로 곱하여, 취약계층 가구수 산출
 - 이때 전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가구당 농식품이용권 지원단가) 매월 지급하는 농식품이용권 지원단가는 가구균등화 지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시나리오 1)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 현행 시범사업 기간('20~'24년)동안 적용한 금액
 - (시나리오 2)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 보건복지부의 가구균등화지수 개편('21년) 적용 금액

[표 2] 가구원수별 월 농식품이용권 지원 단가

(단위: 천원/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시나리오 1] ¹⁾										
-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40	57	69	80	89	98	106	113	120	126
[시나리오 2] ¹⁾										
- 보건복지부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40	65	83	100	119	131	145	159	173	187

주: 1) [시나리오 1]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2020~2024년)과 동일하게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지원단가

2) [시나리오 2]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의 가구균등화지수 개편('21년)에 따라 새로 적용하고자 하는 지원 단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개월 수) 매년 12개월 지급
- (사업운영·관리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국비 부담률) 서울 지역 30%, 서울 외 지역 50%로 가정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2025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서울 지역 30%, 서울 외 지역 50%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현행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3041-385)’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
 - (목적)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식량안보 강화
 - (추진경과) 시범사업(‘20~)을 추진하면서 ‘농식품 바우처 확대’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²⁾로 지정(‘22)
 - －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22.10월~’23.12월) 및 통과(조건부 추진, ‘24.1월)에 따라 본사업 추진 준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2024.4.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3.1

2)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025~, 먹거리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³⁾ 이후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⁴⁾

- (법적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⁵⁾
- (지원대상) 2024년의 경우, 24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9만 7천가구에 대해 농식품 바우처 지급
 - － 본사업('25) 지원대상 및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중

※ [참고자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현황 참고

[표 3]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안) 현황: 2020~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0	2021	2022	2023 ¹⁾	2024	2025(안)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3041-385) ²⁾ (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	3,500	8,900	8,900	14,800	14,800	38,100
－ 농식품바우처 지원	2,793	8,200	8,200	13,900	13,900	32,087
－ 사업운영관리	707	700	700	900	900	6,013

주: 1)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당초 정부요구안(89억원) 대비 59억원 증액
 2) 2025년도 예산안부터 '농식품바우처'로 사업명 변경 예정
 3) 국비 보조율
 － 농식품바우처 지원: ('20~'24년) (지자체) 국비 50%, ('25년) (지자체) 국비 50%(서울 30%)
 － 사업운영관리: ('20~'25년) (민간) 국비 100%: 전담기관(aT) 업무수행경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연도별 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2022.10.26.)

[2022년 3차 예타 대상·면제사업 선정 결과]

□ 예타 대상사업

(단위: 억원, 신청 기준)

부처	유형	사 업 명	총사업비
농식품부	복지·소득이전	• 농식품바우처 사업	49,87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10.26.

4)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2024.1.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사업 현황]

③ 농식품바우처 지원(농식품부)

- (사업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채소·과일·육류 등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및 식생활 교육 지원
- (총사업비) 미정, (사업기간) '25년~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 실증사업 등 11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2024.1.5.

5) 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23조의3 신설)

(1) 취약계층 가구수 전망

□ 최근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중복 제거)는 다음과 같음

[표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중복 제거): 2021~2024년 7월
(단위: 가구, 명)

구분	2021.12월		2022.12월		2023.12월		2024.7월	
	수급가구	수급자	수급가구	수급자	수급가구	수급자	수급가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A=a+b+c+d)	1,637,569	2,268,852	1,699,497	2,359,228	1,788,309	2,458,608	1,851,920	2,537,150
- 생계급여(a)	1,081,655	1,402,260	1,157,750	1,481,771	1,200,418	1,523,735	1,248,476	1,580,076
- 의료급여(b)	98,494	127,182	81,897	122,767	86,777	125,789	84,686	122,407
- 주거급여(c)	394,210	653,899	408,125	678,915	452,391	740,981	471,431	770,754
- 교육급여(d)	63,210	85,511	51,725	75,775	48,723	68,103	47,327	63,913
차상위계층(B)	302,720	399,142	280,736	370,467	263,006	328,345	250,154	310,170
합계(C=A+B)	1,940,289	2,667,994	1,980,233	2,729,695	2,051,315	2,786,953	2,102,074	2,847,320

주: 1. 중복제거시 우선순위:
 - 계층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2. 시설수급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수는 총가구수 대비 9.52%인 것으로 가정
 - 총가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비율 ('24년 7월 기준)

[표 5] 우리나라 총가구수 대비취약계층 가구수 비율

(단위: 가구, %)

	2022	2023	2024.7월
우리나라 총가구(A)	21,579,415	21,833,527	22,080,462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B)	1,699,497	1,788,309	1,851,920
- 차상위계층 가구(C)	280,736	263,006	250,154
총가구 대비 취약계층 비율 (D=(B+C)/A)	9.18%	9.40%	9.5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 적용 (2024년 7월 기준)

[표 6]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 2024년 7월 기준

(단위: 가구)

가구특성별	2024. 7월	
	전국	비율
합계	1,851,920	100.0%
1인가구	1,367,257	73.8%
2인가구	293,817	15.9%
3인가구	112,084	6.1%
4인가구	52,460	2.8%
5인가구	19,486	1.1%
6인가구	4,978	0.3%
7인 이상 가구	1,838	0.1%

주: 일반가구 기준

자료: 복지포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https://www.bokjiro.go.kr>>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의 총가구수에 취약계층 가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을 차례대로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수 산출

[표 7] 취약계층 가구수 전망: 2026~2030년

(단위: 가구)

		2026	2027	2028	2029	2030
우리나라 총가구(A)		22,516,347	22,705,521	22,879,575	23,037,240	23,180,129
총가구대비 취약계층 가구비율(B)		9.52%	9.52%	9.52%	9.52%	9.52%
취약계층 가구수 전망(C=A×B)		2,143,571	2,161,580	2,178,150	2,193,160	2,206,763
가구원수별 비중	1인 가구(D1)	73.8%	73.8%	73.8%	73.8%	73.8%
	2인 가구(D2)	15.9%	15.9%	15.9%	15.9%	15.9%
	3인 가구(D3)	6.1%	6.1%	6.1%	6.1%	6.1%
	4인 가구(D4)	2.8%	2.8%	2.8%	2.8%	2.8%
	5인 가구(D5)	1.1%	1.1%	1.1%	1.1%	1.1%
	6인 가구(D6)	0.3%	0.3%	0.3%	0.3%	0.3%
	7인 가구 이상(D7)	0.1%	0.1%	0.1%	0.1%	0.1%
취약계층 가구원수별 가구 수	1인 가구(E=C×D1)	1,582,580	1,595,876	1,608,110	1,619,192	1,629,235
	2인 가구(E=C×D2)	340,089	342,946	345,575	347,957	350,115
	3인 가구(E=C×D3)	129,736	130,826	131,828	132,737	133,560
	4인 가구(E=C×D4)	60,722	61,232	61,701	62,126	62,512
	5인 가구(E=C×D5)	22,555	22,744	22,919	23,077	23,220
	6인 가구(E=C×D6)	5,762	5,810	5,855	5,895	5,932
	7인 가구 이상(E=C×D7)	2,127	2,145	2,162	2,177	2,190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 복지포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https://www.bokjiro.go.kr>>
3.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2) 가구당 농식품이용권 지원단가

- (가구당 농식품이용권 지원단가) 매월 지급하는 농식품이용권 지원단가는 가구균등화 지수⁶⁾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시나리오 1)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현행 시범사업 기간('20~'24년)동안 적용한 금액

- (시나리오 2)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보건복지부의 가구균등화지수 개편('21년) 적용 금액

[표 8] 시나리오 구분: 가구원수별 월 농식품이용권 지원 단가

(단위: 천원/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시나리오 1]¹⁾										
-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40	57	69	80	89	98	106	113	120	126
[시나리오 2]¹⁾										
- 보건복지부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40	65	83	100	119	131	145	159	173	187

주: 1) [시나리오 1]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2020~2024년)과 동일하게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지원단가

2) [시나리오 2]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의 가구균등화지수 개편('21년)에 따라 새로 적용하고자 하는 지원 단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구원수 1~6인 가구는 각 시나리오에 제시된 해당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 적용
- 가구원 수 7인 이상인 가구는 '7인 이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며, 시나리오에 제시된 '7인 가구'의 지원 단가 적용

*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는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 '7인 이상'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8인, 9인, 10인, ... 가구를 분류하지 않고 있음

- 6) (가구균등화지수)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구성별 효용수준의 차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출 비율

[가구균등화 지수: OECD 및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가구균등화 지수										
OECD										
가구균등화 지수	1.000	1.414	1.732	2.000	2.236	2.449	2.646	2.828	3.000	3.162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	1.000	1.625	2.068	2.500	2.898	3.268	3.618	3.968	4.318	4.6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또한 2024년 7월 기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가구원 수 '7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0.1%인 점을 고려한 것임

- 이때, 지원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지급개월 수 및 국비·지방비 분담률

□ 농식품이용권 지급개월 수는 연간 12개월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근거 참고

□ 농식품이용권의 국비 지원율은 서울 지역 30%, 서울 외 지역 50% 등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근거 참고

○ 국비 차등 지원에 따라 '서울 지역' 및 '서울 외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수는 최근 3년(2022~2024.7월)간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대비 서울 지역 수급가구 수 연평균 비율 활용

- 서울지역 수급가구수 비율: 17.0%

- 서울 외 지역 수급가구수 비율: 83.0%

[표 9] 서울 및 서울 외 지역의 수급가구수 및 비율: 2022~2024.7월

(단위: 가구, %)

연도	지역별 수급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합계
2022	총 가구수	1,234,650	275,663	110,789	52,134	19,457	4,963	1,841	1,699,497
	-서울	222,499	48,048	16,839	7,292	2,579	652	184	298,093
	-서울 외	1,012,151	227,615	93,950	44,842	16,878	4,311	1,657	1,401,404
2023	총 가구수	1,314,325	285,616	110,748	51,732	19,198	4,896	1,794	1,788,309
	-서울	222,499	48,048	16,839	7,292	2,579	652	184	298,093
	-서울 외	1,091,826	237,568	93,909	44,440	16,619	4,244	1,610	1,490,216
2024 (7월 기준)	총 가구수	1,367,257	293,817	112,084	52,460	19,486	4,978	1,838	1,851,920
	-서울	236,947	49,504	16,502	7,111	2,446	625	180	313,315
	-서울 외	1,130,310	244,313	95,582	45,349	17,040	4,353	1,658	1,538,605
연평균	총 가구수(A)	1,305,411	285,032	111,207	52,109	19,380	4,946	1,824	1,779,909
	-서울(B)	227,315	48,533	16,727	7,232	2,535	643	183	303,167
	(비율, B/A)	17.4%	17.0%	15.0%	13.9%	13.1%	13.0%	10.0%	17.0%
	-서울외(C=A-B)	1,078,096	236,499	94,480	44,877	16,846	4,303	1,642	1,476,742
	(비율, C/A)	82.6%	83.0%	85.0%	86.1%	86.9%	87.0%	90.0%	83.0%

주: 일반가구 기준

자료: 복지로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https://www.bokjiro.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총 바우처 지급액 산출

□ 취약계층 가구 수에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 및 지급개월, 서울 및 서울 외 지역 가구비율을 차례대로 곱하여 총 바우처 지급액 산출

[표 10] 총 바우처 지급액 산출: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공통변수	취약계층 가구 수 (A, 가구)	1인 가구(A1)	1,582,580	1,595,876	1,608,110	1,619,192	1,629,235
		2인 가구(A2)	340,089	342,946	345,575	347,957	350,115
		3인 가구(A3)	129,736	130,826	131,828	132,737	133,560
		4인 가구(A4)	60,722	61,232	61,701	62,126	62,512
		5인 가구(A5)	22,555	22,744	22,919	23,077	23,220
		6인 가구(A6)	5,762	5,810	5,855	5,895	5,932
		7인 이상 가구(A7)	2,127	2,145	2,162	2,177	2,190
	지급개월 수(B, 개월)		12	12	12	12	12

시나리오 1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범사업과 동일)

농식품바우처 월 지급단가 (C, 천원/가구·개월)	1인 가구(C1)	40	40	40	40	40
	2인 가구(C2)	57	57	57	57	57
	3인 가구(C3)	69	69	69	69	69
	4인 가구(C4)	80	80	80	80	80
	5인 가구(C5)	89	89	89	89	89
	6인 가구(C6)	98	98	98	98	98
	7인 이상 가구(C7)	106	106	106	106	106
총 지급액 ($D = \sum_{i=1}^7 (A_i \times B \times C_i)$, 백만원)	1인 가구(D1)	759,638	766,021	771,893	777,212	782,033
	2인 가구(D2)	232,621	234,575	236,373	238,002	239,478
	3인 가구(D3)	107,421	108,324	109,154	109,906	110,588
	4인 가구(D4)	58,293	58,783	59,233	59,641	60,011
	5인 가구(D5)	24,088	24,291	24,477	24,646	24,799
	6인 가구(D6)	6,776	6,833	6,885	6,933	6,976
	7인 이상 가구(D7)	2,706	2,729	2,750	2,769	2,786
	소계($D = \sum_{i=1}^7 D_i$)	1,191,544	1,201,555	1,210,766	1,219,109	1,226,671

시나리오 2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 적용)

농식품바우처 월 지급 단가 (E, 천원/가구·개월)	1인 가구(E1)	40	40	40	40	40
	2인 가구(E2)	65	65	65	65	65
	3인 가구(E3)	83	83	83	83	83
	4인 가구(E4)	100	100	100	100	100
	5인 가구(E5)	119	119	119	119	119
	6인 가구(E6)	131	131	131	131	131
	7인 이상 가구(E7)	145	145	145	145	14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지급액 ($F = \sum_{i=1}^7 (A_i \times B \times F_i)$, 백만원)	1인 가구(F1)	759,638	766,021	771,893	777,212	782,033
	2인 가구(F2)	265,269	267,498	269,549	271,406	273,089
	3인 가구(F3)	129,217	130,302	131,301	132,206	133,026
	4인 가구(F4)	72,866	73,478	74,041	74,552	75,014
	5인 가구(F5)	32,208	32,479	32,728	32,953	33,158
	6인 가구(F6)	9,058	9,134	9,204	9,267	9,325
	7인 이상 가구(F7)	3,702	3,733	3,761	3,787	3,811
	소계($F = \sum_{i=1}^7 F_i$)	1,271,958	1,282,645	1,292,477	1,301,384	1,309,4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 바우처 지급액에 지역별(서울 및 서울 외) 수급가구 비율과 국비 지원율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국비 및 지방비를 계산
- 지역별 수급가구 비율: 서울 17.0%, 서울 외 지역 83.0%
 - 국비 지원율: 서울 30%, 서울 외 지역 50%

[표 11] 시나리오별(지역별 및 부담주체별) 총 바우처 지급액 산출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총 바우처 지급액		1,191,544	1,201,555	1,210,766	1,219,109	1,226,671	6,049,644	1,209,929
-지역별	서울 지역	202,952	204,658	206,226	207,648	208,935	1,030,419	206,084
	서울외 지역	988,591	996,897	1,004,539	1,011,462	1,017,735	5,019,224	1,003,845
-부담주체별	국비	555,181	559,846	564,137	568,025	571,548	2,818,738	563,748
	지방비	636,362	641,709	646,628	651,084	655,122	3,230,906	646,181
시나리오 2								
총 바우처 지급액		1,271,958	1,282,645	1,292,477	1,301,384	1,309,456	6,457,920	1,291,584
-지역별	서울 지역	216,649	218,469	220,144	221,661	223,036	1,099,960	219,992
	서울외 지역	1,055,309	1,064,175	1,072,333	1,079,723	1,086,420	5,357,960	1,071,592
-부담주체별	국비	592,649	597,629	602,210	606,360	610,121	3,008,968	601,794
	지방비	679,309	685,016	690,267	695,024	699,335	3,448,952	689,7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추계 결과

- 총 바우처 지급액에서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농식품이용권 지급액(기준선)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추가재정소요 = 전체 사업비용 - 현행 사업예산(기준선)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가구원수별 농식품이용권 단가에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는 경우, 5년간 총 5조 7,098억 7,800만원
 - (국 비) 5년간 총 2조 6,583억 2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3조 515억 7,700만원
- (시나리오 2) 가구원수별 농식품이용권 단가에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 지수(「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개편된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 5년간 총 6조 1,181억 5,400만원
 - (국 비) 5년간 총 2조 8,485억 3,1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3조 2,696억 2,300만원

[표 12] 농식품이용권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개정안	시나리오 1 (A)	1,191,544	1,201,555	1,210,766	1,219,109	1,226,671	6,049,644	1,209,929
	국비	555,181	559,846	564,137	568,025	571,548	2,818,738	563,748
	지방비	636,362	641,709	646,628	651,084	655,122	3,230,906	646,181
	시나리오 2 (B)	1,271,958	1,282,645	1,292,477	1,301,384	1,309,456	6,457,920	1,291,584
	국비	592,649	597,629	602,210	606,360	610,121	3,008,968	601,794
	지방비	679,309	685,016	690,267	695,024	699,335	3,448,952	689,790
현행	기준선(C)	67,953	67,953	67,953	67,953	67,953	339,766	67,953
	국비	32,087	32,087	32,087	32,087	32,087	160,436	32,087
	지방비	35,866	35,866	35,866	35,866	35,866	179,329	35,866
추가 재정소요	시나리오 1 (D=A-C)	1,123,591	1,133,602	1,142,812	1,151,156	1,158,717	5,709,878	1,141,976
	국비	523,094	527,759	532,050	535,938	539,461	2,658,302	531,660
	지방비	600,497	605,843	610,762	615,218	619,257	3,051,577	610,315
	시나리오 2 (E=B-C)	1,204,005	1,214,692	1,224,524	1,233,431	1,241,502	6,118,154	1,223,631
	국비	560,562	565,541	570,122	574,272	578,033	2,848,531	569,706
	지방비	643,443	649,150	654,402	659,158	663,469	3,269,623	653,925

주: 1) [시나리오 1] OECD 가구균등화지수 적용(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2020~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

2) [시나리오 2]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개편된 지수 적용)

3) 기준선은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안 편성액으로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23조의4 신설)

(1) 전체 사업운영·관리비

- 전체 사업운영·관리비는 농식품이용권 시스템 유지관리, 바우처 이용자 관리 및 전달체계 관리, 지자체 사업운영 지원, 사업성과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표 13] 전체 사업운영·관리비 산출: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 지자체 사업 운영 관리비	소계 ¹⁾		6,475	6,683	6,899	7,120	7,343	34,520
	국비		3,091	3,190	3,293	3,399	3,505	16,479
	지방비		3,384	3,493	3,606	3,721	3,838	18,041
2. 전담기관 사 업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1,227	1,227	1,227	1,227	1,227	6,135
	바우처 이용자 관리		2,058	2,075	2,091	2,105	2,118	10,448
	바우처 전달체계 관리		2,544	2,544	2,616	3,593	3,595	—
	소계(국비)		5,829	5,846	5,934	6,925	6,941	31,475
3. 사업성과 분석(국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4. 전문가 자문 및 협의(국비)			10	10	10	10	10	50
5.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 교육 지원	식생활 교육 지원 ¹⁾	기본교육	2,144	2,162	2,178	2,193	2,207	10,883
		심화교육	58,305	58,795	59,246	59,654	60,024	296,024
		소계	60,449	60,957	61,424	61,847	62,231	306,907
		국비	28,165	28,402	28,619	28,817	28,995	142,999
		지방비	32,284	32,555	32,804	33,030	33,235	163,908
	식생활 교육 운영	교육자료 제작	150	150	150	150	150	752
		교육자료 배포	27	27	27	27	28	136
		강사교육	76	76	76	76	76	378
		식생활 교육 기관 운영	371	371	371	371	371	1,855
		영양 상담 및 모니터링	527	527	527	527	527	2,635
		소계(국비)	1,151	1,151	1,151	1,151	1,151	5,755
		소계	61,599	62,107	62,575	62,998	63,382	312,662
	합계 (1+2+3+4+5)		75,414	76,147	76,918	78,553	79,176	386,207
		국비	39,746	40,099	40,508	41,802	42,103	204,258
	지방비	35,668	36,048	36,410	36,751	37,073	181,950	

주: 1) 국비지원율: 서울 30%, 서울외 지역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현행 사업운영·관리비(기준선)

- 2025년도 본사업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운영비를 기준선으로 가정
 - ‘지자체 사업운영’ 내역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율은 서울(30%)과 서울외 지역(50%)으로 구분
 - ‘전담기관 사업운영’ 내역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 나머지 사업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14] 현행(기준선, 2025년 예산안 기준) 사업운영·관리비 산출: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26~’30)
1. 지자체 사업운영	6,274	6,475	6,683	6,899	7,120	7,343	34,520
국비	2,995	3,091	3,190	3,293	3,399	3,505	16,479
지방비	3,279	3,384	3,493	3,606	3,721	3,838	18,041
2. 전담기관 사업운영(국비)	2,503	2,558	2,612	2,667	2,723	2,777	13,336
3. 사업성과분석(국비)	504	504	504	504	504	504	2,520
4. 자문회의 등 경비(국비)	10	10	10	10	10	10	50
합계(기준선) (1+2+3+4)	9,291	9,548	9,809	10,079	10,356	10,634	50,426
국비	6,012	6,163	6,316	6,474	6,635	6,797	32,385
지방비	3,279	3,384	3,493	3,606	3,721	3,838	18,0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I-1)」, 2024.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추계기간 동안 전체 사업운영·관리비에서 현행 사업운영·관리비(기준선)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추가재정소요 = 전체 사업운영·관리비 - 현행 사업운영·관리비(기준선)
- 추계결과, 전담기관의 사업수행경비 등 농식품이용권 사업운영·관리비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3,357억 8,100만원으로 추계된
 - (국 비) 5년간 총 1,718억 7,3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1,639억 800만원

[표 15]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전체 사업· 운영관리비 (A)	지자체 사업운영	6,475	6,683	6,899	7,120	7,343	34,520	6,904
	전담기관 사업운영	5,829	5,846	5,934	6,925	6,941	31,475	6,295
	사업성과분석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1,500
	전문가 자문 및 협의	10	10	10	10	10	50	10
	농식품바우처 식생 활교육 지원	61,599	62,107	62,575	62,998	63,382	312,662	62,532
	소계(A)	75,414	76,147	76,918	78,553	79,176	386,207	77,241
	국비	39,746	40,099	40,508	41,802	42,103	204,258	40,852
	지방비	35,668	36,048	36,410	36,751	37,073	181,950	36,390
현행 (기준선) (B)	지자체 사업운영	6,475	6,683	6,899	7,120	7,343	34,520	6,904
	전담기관 사업운영	2,558	2,612	2,667	2,723	2,777	13,336	2,667
	사업성과분석	504	504	504	504	504	2,520	504
	자문회의 등 경비	10	10	10	10	10	50	10
	소계(B)	9,548	9,809	10,079	10,356	10,634	50,426	10,085
	국비	6,163	6,316	6,474	6,635	6,797	32,385	6,477
	지방비	3,384	3,493	3,606	3,721	3,838	18,041	3,608
추가재정소요(C=A-B)		65,866	66,338	66,838	68,197	68,542	335,781	67,156
	국비	33,583	33,783	34,034	35,167	35,307	171,873	34,375
	지방비	32,284	32,555	32,804	33,030	33,235	163,908	32,7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I-1)」(2024.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식품바우처 현황 및 실적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20~'24)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현황 및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범 지자체		4개 시·군·구 (세종시, 청양군, 완주군, 김천시)	10개 시·군·구 (평창군, 괴산군, 당진시, 청양군, 김제시, 해남군, 문경시, 예천군, 거제시, 밀양시)			15개 시·군·구 (부산진구, 웅진군, 양평군, 평창군, 괴산군, 당진시, 청양군, 김제시, 정읍시, 장성군, 해남군, 예천군, 청도군, 거제시, 밀양시)			18개 시·군·구 (부산진구, 달성군, 웅진군, 평창군, 화천군, 괴산군, 충주시, 당진시, 청양군, 고창군, 김제시, 장성군, 강진군, 해남군, 예천군, 청도군, 거제시, 밀양시)			24개 시·군·구 (부산진구, 달성군, 웅진군, 영월군, 괴산군, 충주시, 당진시, 청양군, 예산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강진군, 곡성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상주시, 예천군, 청도군, 거제시, 밀양시, 하동군, 서귀포시)
	지원 가구 수	1만 5천 가구	3만 3천 가구			4만 7천 가구			6만 6천 가구			9만 7천 가구(p)
	지원금액	2,449백만원	15,416백만원			15,046백만원			25,502백만원			27,800백만원(p))
	지원기간	4개월 (9월~12월)	12개월 (1월~12월)			8개월 (3월~10월)			10개월 (3월~12월)			6개월 (3월~8월)
	가구당 지원금액	163천원	467천원			320천원			386천원			287천원(p)
가구당 월 평균 지원금액	41천원	39천원			40천원			39천원			48천원(p)	
가구당 월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월 지원금액 (천원)	40	57	69	80	89	98	106	113	120	126	
지원율 (%)	국비	100	50			50			50			50
	지방비	—	50			50			50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